

#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610
------	------

2024.03.05.  
기획경제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3월 5일, 홍국표 의원(찬성자 46명)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7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】

-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(2024.3.5.) 상정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홍국표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의 패션봉제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뷰티패션 산업의 토대가 되며,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형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, 신규 인력 유입의 단절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음.

- 이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·시행, 지원 사업,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발의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패션봉제산업 등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
- 다. 분야별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할 수 있음(안 제7조).
- 라.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(안 제9조·안 제10조).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조례안은 대표적인 도시형제조업인 패션봉제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, 지원 사업,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임.

## 나. 서울시 도시형제조업의 현황과 패션봉제산업 지원의 필요성

- 서울시는 4대 도시형제조업<sup>1)</sup>에 대한 지원을 위해 “2012년 4대 도시형 제조업 육성·지원 계획”을 수립(2011.9.29.)하고 특성화고교 재학생과 각종 제조업 관련 교육기관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연계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음.
- 이후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2014.5.28.)과 「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(2015.10.8., 이하 “도시형소공인조례”)가 제정되면서 5대 도시형제조업<sup>2)</sup>을 대상으로 ▶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·육성, ▶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, ▶도시형 제조업(소공인) 지원, ▶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, ▶스마트앵커 및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·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- 그러나 5대 도시형제조업의 업종과 집적지별로 직면한 현안이 서로 다르고, 서울시의 지원이 대부분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의 집적지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업종별로 개별 조례에 따른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.
- 이에 따라 5대 도시형제조업 중 귀금속 분야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귀금속·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(이하 “귀금속·보석산업조례”)가 제정(2023.10.4.)된 바 있으며,

1) 의류봉제, 귀금속, 인쇄, 기계

2) 4대 도시형제조업에 수제화가 추가됨.

의류봉제 분야에서도 서울시 전체 제조업 중 가장 높은 비중(23.7%)을 차지하고 다른 업종과 달리 서울시 전역에 집적지가 분포하고 있다는 업종의 특성상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음<sup>3)</sup>.
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의류봉제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.

## 다. 주요 조문 검토

### (1) 정의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“패션봉제”, “패션봉제산업”, “패션봉제업체”를 각각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패션봉제”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, 양말, 액세서리,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. 2. “패션봉제산업”이란 패션봉제 제품의 기획·제조·판매·정보·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. 3. “패션봉제업체”란 패션봉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.
--

-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과 한국어 표준대사전,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는 ‘패션봉제’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,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은 ‘의류봉제업’ 또는 ‘봉제업’으로 통칭되어 왔음.

3) ‘패션봉제산업 지원정책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’, 2023년12월12일 개최.

- 그러나 현재 통칭되고 있는 ‘의류봉제’ 를 사용할 경우 양말, 봉제 액세서리, 봉제 생활용품 등의 유관 분야가 제외될 우려가 있고, 그동안 봉제 업계종사자나 유관 단체들이 ‘패션봉제산업’ 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조례안에서 ‘패션봉제’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 서울시는 ‘패션봉제’ 의 용어사용과는 별개로 동 조례안과 같이 패션봉제의 정의를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생산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면 무봉가공 생산품은 패션봉제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, 또한 정의 중 액세서리나 생활용품은 의미가 모호하므로 패션봉제의 정의에서 삭제하고 수제화, 가방, 잡화를 정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-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각종 직물, 편조원단, 가죽 및 기타 재료 (모피 제외)를 재단, 재봉하여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‘봉제의복 제조업’ 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, 무봉가공에 의한 의류제조라 하더라도 재단 행위는 필수적이므로 패션봉제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- 또한 편조 방법 또는 직물, 가죽, 모피 등을 가공하여 양말, 모자,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‘의복 액세

서리 제조업’ 으로 명시하고 있어 액세서리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음.

- 더욱이 패션봉제 분야와 산업구조나 사업체 분포 등이 상이한 수제화 분야를 패션봉제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은 패션봉제 분야에 대한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상치되는 것이라 하겠음.

## (2) 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- 안 제5조는 패션봉제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패션봉제산업 관련 ▶현황과 전망, ▶정책 목표와 방향, ▶기술의 혁신과 첨단화 및 보급, ▶집적지 활성화, ▶지원사업, ▶법·제도와 정책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하였음.
- 또한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유관 조례인 도시형소공인조례는 3년 주기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고,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전략산업육성조례”)에 따라 지정된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별도의 진흥계획을 수립·

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조례안의 종합계획과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 간의 선후관계, 수립주기, 대상,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집행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### < 유관 조례별 계획수립 관련 비교 >

구분	도시형소공인조례	귀금속보석산업조례	패션봉제산업조례	전략산업조례
수립권자	시장	시장	시장	시장 및 구청장
수립주기	종합계획 : 3년 시행계획 : 1년	기본계획 : 3년 (도시형소공인종합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가능) 시행계획 : 1년	종합계획 : 5년 시행계획 : 1년	진흥지구 신청 전
주요내용	1.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. 제도와 조례의 개선 3. 수련기술활용및전수 4. 인력양성 및 공급 5. 기술보급혁신첨단화 6. 국내외 판로 지원 7. 집적지구 지원 8. 디지털화 활성화 9. 권역보호및복합진흥 10. 근로자 고용안정, 권역보호및복합진흥 11. 그밖에필요한사항	1. 지원 방향과 목표 2. 전문인력의 양성 3. 인공유족 경영및 기술지원 등 4. 행와기술개발연구 사업 등의 수립 5. 국내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 6. 재정지원 7. 그밖에필요한사항	1. 현황과 전망 2. 정책목표와 방향 3. 기술의학과첨단화 및 보급 4. 집적지 활성화 5. 지원사업 6. 법제도와 정책개선 7.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1. 대상지의 현황 및 권역업종 2. 권역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 3. 권역업종 시설수지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 4. 지구유계획 및 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5. 진흥지구의 육성·관리를 위한 자원 확보방안 6. 진흥지구의 육성·관리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7. 그 밖에 해당 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(3) 지원사업(안 제7조)

- 안 제7조는 시장이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▶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 및 훈련, ▶판로개척 및 마케팅, ▶시제품 제작과 공용 장비 이용, ▶기술 고도화와 작업설비 교체, ▶경영·기술상담 및 정보제공, ▶작업환경과 처우 개선, ▶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

지원하고,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였음.

-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형소공인조례를 근거로 ▶인력 양성 및 확보, ▶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, ▶우수 숙련기술인 선정, ▶기술 전수 지원, ▶국내외 판로개척 지도·자문 등 육성 및 지원, ▶집적지구 금융지원, ▶집적지구 인프라 구축, ▶지원센터 설치·운영, ▶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, ▶공동사업 등을 지원해 왔으며, 동 조례안에서도 이를 유사하게 규정함으로써 각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임.
- 또한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적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패션봉제산업 유관단체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법리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 서울시는 “서울패션위크”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패션봉제 산업 관련 사업의 조례상 근거를 확보하고자 “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패션쇼 및 수주상담회 개최, 수출·투자유치 등” 을 지원 사업에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- 그동안 “서울패션위크” 는 방침4)에 근거하여 사업이 시행되어 온바,

사업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“서울패션위크”의 지속적인 개최와 성장을 담보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.

- 그러나 서울패션위크는 국내외 패션 관련 기업·단체와의 행·재정적 협업이 필수적이며 조직위원회 구성·운영, 해외 패션쇼와의 연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안에 사업근거를 추가하기 보다는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(홍국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61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홍국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칠성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윤영희, 이경숙, 이민석, 이민옥, 이병도, 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이상훈, 이성배, 이숙자, 이은림, 이종환, 이희원, 임규호, 임춘대, 장태용, 정준호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황철규 의원(46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의 패션봉제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뷰티패션 산업의 토대가 되며,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형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, 신규 인력 유입의 단절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음.
- 이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·시행, 지원 사업,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발의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패션봉제산업 등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
나.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.

다. 분야별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할 수 있음(안 제7조).

라.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함(안 제9조·제10조).

### 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##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패션봉제”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, 양말, 액세서리,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패션봉제산업”이란 패션봉제 제품의 기획·제조·판매·정보·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.
3. “패션봉제업체”란 패션봉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패션봉제산업 사업자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패션봉제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패션봉제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패션봉제산업 관련 현황과 전망
2.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
3. 패션봉제 기술의 혁신과 첨단화 및 보급
4. 패션봉제산업 집적지 활성화
5.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
6. 패션봉제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·제도와 정책 개선
7.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.

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패션봉제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

제7조(패션봉제산업의 지원)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패션봉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 및 훈련

2. 패션봉제업체 생산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
  3. 패션봉제 시제품 제작과 공용장비 이용
  4. 패션봉제업체 기술 고도화와 작업설비 교체
  5. 패션봉제업체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
  6.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과 처우 개선
  7.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
  8. 그 밖에 시장이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패션봉제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
#### 4.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

5.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패션봉제산업 관련 실·본부·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##### 1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2. 패션봉제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3.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1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2조(표창)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패션봉제업체 및 종사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(실태조사 등), 제7조(패션봉제산업의 지원), 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는 서울시 소관부서 문의 결과 서울시에서 기 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니며, 제9조(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및 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는 관련 비용 발생

※ 단, 제6조(실태조사 등), 제7조(패션봉제산업의 지원), 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의 경우 해당 사업을 서울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

〈서울시 패션봉제산업 관련 추진중인 사업 및 예산현황〉

(단위:천원)

관련 조·항	사업명	사업내용	예산('24년)	추진기간
제6조·제7조 (패션봉제산업의 지원)	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	지원대상 : 서울관내 봉제업체 지원규모 : 총 570개 업체(목표) 지원내용 : 작업환경개선, 설비지원 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9백만원 추진방법 : 자치구 공모 및 매칭	2,576,400 (4,520,000) *( ) 타제조업 포함	2019.~
제8조 (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등)	서울패션허브 운영	대상지 : DDP패션몰 및 동대문종합시장 운영방법 : 민간위탁 위탁기간 : 21.4.1~ 24.3.31. 사업내용 : 서울패션산업 생태계 혁신 거점공간 운영	7,947,505	2021.~

(서울시 관련부서 제공자료)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 : 제9조(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및 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

##### 나. 전제

- (인원) 당연직 1명, 시의원 1명 및 외부전문가 18명으로 총 20명 이내로 인원수 전제
- (횟수) 개최 횟수는 연 6회 이내로 전제 (서울시 뷰티산업 육성위원회 전년도 개최 횟수 참고)
- (수당)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 단가로 전제

※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 참고
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5년(2025년~2029년) 이후 계속 발생

라. 방법 :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뷰티산업 육성위원회

구성·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 = 91,000천원(연간 18,2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구분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입	제9조 (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	제10조 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	16,200	16,200	16,200	16,200	16,200	81,000
	소계(b)	18,2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	91,000
□ 총 비용(b-a)		18,2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	91,000

4. 덧붙이는 의견 : 운영위원 구성인원에 따라 소요비용 변동 가능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당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계분석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제9조(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및 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는 신설된 내용으로  
 관련 비용 발생

### 2. 세부추계내역

○ 총 비용 = 91,000천원(연간 18,2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구분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입	제9조 (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	제10조 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	16,200	16,200	16,200	16,200	16,200	81,000
	소계(b)	18,2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	91,000
□ 총 비용(b-a)		18,2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	91,000

- 위원회 운영비 : 250천원 × 6회 = 1,500천원

- 위촉식 운영비 : 25천원 × 20명 = 500천원

- 참석수당 : 16,200천원

(지급인원) : 18명 (총 20명 중 당연직 1명, 시의원 1명 제외)

(개최횟수) : 연 6회

(산출방법) : 150,000원 × 18명 × 연 6회 = 16,200천원 ※ 위원회 참석수당 중 초과분 미반영